

# 「동작 보라매역 프리센트」

##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I

###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77-1 외 5필지
- 공급규모 : 지하4층 ~ 지상20층(총 124세대 중 공동주택 91세대\_기부채납 임대주택 33세대)
- 입주예정시기 : 2026년 10월 예정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공급대상(예정)

주택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시 표기	세대별 계약면적(m <sup>2</sup> )					공급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민영 주택	43.2110A	43A	43.2110	27.3901	70.6011	37.1493	107.7504	33
	43.2110B	43B	43.2110	27.3901	70.6011	37.1493	107.7504	28
	42.7600C	42C	42.7600	27.1042	69.8642	36.7616	106.6258	28
	43.2110Ba	43Ba	43.2110	27.3901	70.6011	37.1493	107.7504	2
	공급세대 합계							91

- 기관별 배정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85m<sup>2</sup>이하 민영주택 10% 범위 내 공급

(단위 : 세대)

구분	43A		43B		42C		43Ba		소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장애인	1	5	1	5	1	5	-	-	3	15
국가유공자 등	1	5	-	-	-	-	-	-	1	5
장기복무군인	1	5	1	5	-	-	-	-	2	10
중소기업근로자	-	-	1	5	1	5	-	-	2	10
장기복무세대군인	-	-	-	-	1	5	-	-	1	5
합계	3	15	3	15	3	15	-	-	9	45

-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m<sup>2</sup>)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공급면적(m<sup>2</sup>) x 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 ÷ 3.3058
-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에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공급

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 특별공급 일정계획(예정)

구 분	일 정	비 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 05. 20(월) (예정)	일간신문 및 당사 홈페이지 (추후 공개 예정)
• 견본주택 개관일	2024. 05. 20(월) (예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29번지
• 특별공급 접수일자	2024. 05. 27(월) (예정)	한국감정원 청약home 인터넷청약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4. 06. 04(화) (예정)	한국감정원 청약home 인터넷청약 (www.applyhome.co.kr)

- 20.03.02.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청약(청약home)신청(서류제출 없음)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10:00~16:00) 가능합니다. 단, 견본주택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필요서류 견본주택 별도 문의)
- ※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I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 특별공급 자격요건 및 당첨자선정 방법

구분	내용	
1회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li>•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생애최고,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함.</li> <li>•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특별공급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li> </ul>	
	<b>처리방법</b>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b>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b>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	--

구분	내용
----	----

청약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b>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b>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p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인천광역시</th> <th>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대상자</b>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li> <li>※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li> <li>※ 추천기관</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관련법규</th> <th>해당기관</th> </tr> </thead> <tbody> <tr> <td>국가유공자(장기복무제대군인포함) 등</td> <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 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td> <td>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td> </tr> <tr> <td>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td> <td>「군인복지기본법」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td> <td>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td> </tr> <tr> <td>중소기업근로자</td> <td>「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td> <td>서울지방중소기업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td> </tr> <tr> <td>장애인</td> <td>「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td> <td>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서울시청 장애인복지과 /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td> </tr> </tbody> </table>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장기복무제대군인포함)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 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서울지방중소기업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서울시청 장애인복지과 /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장기복무제대군인포함)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 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서울지방중소기업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서울시청 장애인복지과 /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당첨자 선정 방법	<p>■ <b>당첨자 선정방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ul>
-----------------	--

■ **특별공급 유의사항**

구분	내용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는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 선정합니다. 단,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대상 세대수의 50% 미만인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며,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 입주자로 선정)</li> <li>• 특별공급 당첨 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이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li> <li>•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li> <li>•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li> <li>•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li> <li>•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인터넷 청약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 2, 제 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는가능)</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에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시,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거합니다.</li> <li>•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며 신청이 가능합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li> </ul>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III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29번지 「동작보라매역 프리센트」 견본주택
- 분양홈페이지 : <https://pricent.co.kr>
- 분양문의 : ☎ 1577-4830
- ※ 참고자료1 : 동작 보라매역 프리센트 리플렛

서울의 동서남북 어디로든 빠르게!

**보라매역 단, 150미터!**  
**놀라운 미래가치와 생활가치를 만나다**



TRAFFIC HUB

#### 초역세권 교통

7호선(보라매), 보라매역까지 150m 신림선(여의도,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시흥철도 채속교통망



PERFECT INFRA

#### 남다른 생활

보라매공원, 동차세우서, 롯데백화점, 보라매초, 대림초, 대방중 등 우수한 학교와 생활 인프라



RISING VALUES

#### 풍부한 수요

보라매역, 동성문사, 보라매병원, 신길뉴타운 등의 다양한 고객수요와 풍부한 배후 수요





GRAND VISION




#### 눈부신 비전

첫 보라매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여의대방로 4거리 코너 랜드마크 신안산선(2025년 예정) 등 다수의 개발 호재



## 동작 보라매역 프리센트 주거시설 POINT!

- 
**교통 프리미엄** | 7호선, 신림선 환승역인 보라매역 150m의 초역세권 및 올림픽 대로, 서부간선도로 등 광역교통망
- 
**조망 프리미엄** | 세남부권 대표 공원인 약 42만㎡의 보라매공원뷰와 시티뷰를 확보한 전 세대의 탁월한 조망권

- 
**설계 프리미엄** | 무상 발코니 확장으로 개방감과 활용도를 높인 특화설계 및 각종 빌트인 가전, 가구 등 무상 제공되는 특별한 옵션
- 
**비전 프리미엄** |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 신길 뉴타운 촉진계획 등의 개발 호재를 누리는 동작구의 눈부신 미래까지
- 
**가격 프리미엄** | 인근 주요 타 경쟁 사업자와 비교할 때 초기 자금부담은 낮추고 안정감을 높여주는 합리적인 분양가



※ 본 자료는 실제 사업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